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61호

의 안 명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

대 상 기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의결연월일 2015. 12. 21.

주 문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21일

위원장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희망의 새시대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2015. 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현 황 ····· 3

Ⅲ. 실태 및 문제점 ····· 8

1. 형식적 관리감독이 부실검사기관 존속 보장 ····· 8

2. 부실검사기관이 재지정에서 탈락하지 않는 구조 ···· 14

3. 불투명한 검사관리체계로 부실검사 확인·적발 곤란 ·· 17

4. 용기정보 인식 불가능 용기 유통 ····· 23

Ⅳ. 개선방안 ····· 25

1.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 내실화 ····· 25

2. 부실검사기관 지정관리 강화 ····· 31

3. 투명한 검사관리시스템 구축 ····· 32

4. 용기정보 인식 불능 용기에 대한 관리 강화 ····· 37

Ⅴ. 조치사항 ····· 38

Ⅰ. 추진 배경

□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이나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 LPG는 용기에 담아 유통되고 있어 배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달리 **가스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

※ 최근 5년간 가스사고 중 **LPG 사고가 6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전국 LPG 용기의 상당수(45.4%)인 370만개가 **20년 이상된 노후 용기**로 추정되나, **용기 안전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우려 지속

※ LPG 용기 안전검사가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한 부실검사라는 지적 계속

- ▲ 낡은 LPG 용기 검사않고 도색만 하고 유통('12.9월 한겨레), ▲ 전문검사기관이 폐기대상 용기 유통('13.2월, SBS), ▲ 내압시험 생략·시험성적서 위조('13.10월, KBS), ▲ 내압시험기 운영 프로그램 조작('15.6월 TV조선) 등

□ LPG 용기 재검사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감독과 허술한 검사관리체계**로 인해 부실검사, 불량용기 유통 등 안전 관리 취약

○ 검사기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된 상주입회인이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등 형식적 관리·감독이 부실검사기관 존속 보장

※ 23개 전문검사기관 상주입회인 중 22개 기관에 가스안전공사 퇴직자 채용

○ 또한, LPG 용기를 **검사도 하지 않고 다시 유통**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여 불합격률을 축소하는 등 불투명한 검사관리체계로 부실검사

○ **용기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불량 용기가 유통**되는 등 용기 관리 허술

□ 따라서 LPG 용기 재검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불량 용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참고 > LPG 폭발사고 사례

▶ 대구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체 **무허가시설에서 노후 용기를 사용하여 불법 충전**을 하던 중 가스 누출 폭발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12명 부상**당한 대형 폭발사고 발생 (한겨레, 2013년 9월)

▶ 제주시 연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가정용 LPG 용기 폭발**로 **7명 전신화상**, 제주시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LPG가스폭발로 2명 부상 (시사제주, 2015년 4월)

▶ 청주시 용암동 아파트 인근 **LPG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LPG가스통 파열사고**로 배달차량에 설치된 철판이 날아가 인근 상가 유리문 파손, 당시 인근에 행인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음(동양일보, 2014년 5월)

▶ 경남 사천시 소재 **LPG가스용기 검사소**에서 가스누설검사 중 **91년 10월 생산된 노후 용기가 폭발**하여 건물이 파손되고, 작업자 2명 부상 (경남도민일보, 2014년 3월)

▶ 경북 합천 도자기 공장의 숙소건물에서 **LPG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태국인 1명 사망, 1명 부상**을 입고 **공장건물은 완전히 붕괴** (한국가스신문, 2014년 2월)

▶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에서 LPG가 폭발해,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인근 100m내 주택 10여채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 발생 (세계일보, 2013년 11월)

▶ 경기도 평택 세교동 먹자골목 안 이발소에서 **LPG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주택가 **상가건물 10 여채가 부서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대가 파손되었으며, **중상자 2명 포함 9명 부상** (한국가스신문, 2013년 9월)

▶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LPG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식당 주인 등 6명은 중상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7월)

▶ 광주광역시 북구 **호산나기도원 LPG 폭발**로 인한 화재로 부흥회 준비 중이던 교인 **4명이 사망** (뉴스1, 2013년 1월)

▶ '12년 7월 강원도 삼척 소재 교회 교육관에서 **LPG 가스통이 터져** 어린이 7명 포함 **총 10명 중경상**을 입은데 이어, 8월 강원도 삼척 상가에서 **LPG 20kg 용기 가스 누출**로 **건물이 붕괴되고 11명 중상** (문화일보·한겨레, 2012년 10월)

▶ (해외사례) 인도 중부에 있는 한 식당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2층 건물이 붕괴되고, 식당 손님 등 **10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 (KBS, 2015년 9월)

▶ (해외사례) 중국 안후이성 소재 무허가 식당에서 **LPG가스통 폭발**로 인한 연쇄 화재로 **17명이 사망** (매일경제, 2015년 10월)

Ⅱ. 현 황

1. LPG 용기 재검사 현황

□ LPG 용기 현황

○ ’14.12말 현재 전국 LPG 용기는 총 813만개로 이 중 과반수 정도(45.4%)인 369만개가 20년 이상된 용기

* LPG 용기 :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 경과연수별 LPG 용기 유통현황 >

(’14.12.31. 기준, 단위 : 만개)

합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813	219(27%)	32(3.9%)	43(5.3%)	150(18.4%)	369(45.4%)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LPG 용기 재검사제도

○ **(재검사)** LPG 용기는 제조 후 사용하기 전에 1차 검사를 받고, △ **일정기간 경과** △ **손상발생** △ **합격표시의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용기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재검사업무 위탁)** 용기 재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검사방법)** 용기상태(1~4급)와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달리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한 용기는 파기

* 검사방법: 1급 또는 5년경과(외관검사로 이상 없으면 합격), 2급 또는 10년경과(가압시험), 3급 또는 15년경과(내압시험), 4급(외관검사만으로 불합격)

○ **(검사주기)** 15년 미만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재검사(500ℓ 미만)

< LPG 용기 재검사 공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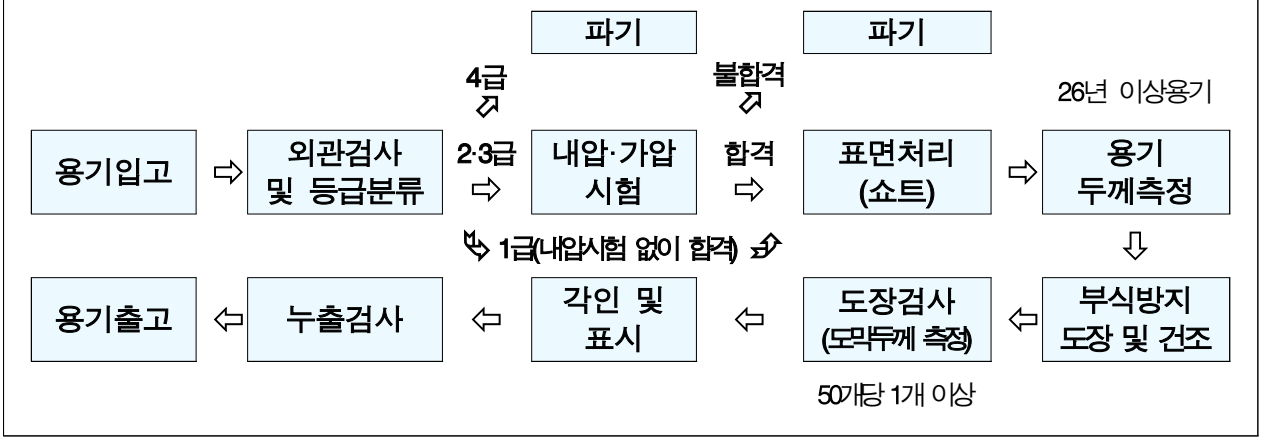

○ **(검사실적)** 최근 5년간 재검사한 LPG 용기 수는 연간 평균 309만개이고, 이중 불합격 등으로 파기한 용기 수는 검사대상의 8% 정도

- 전문검사기관 별로 연간 평균 LPG 용기 약 13만 4천개 검사

< 최근 5년간 LPG 용기 재검사 현황 >

('14.12.31. 기준, 단위 : 만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기타(5년평균)
검사수량	453	342	211	257	282	309
불합격율(%)	2.6	2.9	6.4	14.8	13.3	8.0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2. 전문검사기관 지정 · 재지정 및 규정위반기관 행정처분

□ 전문검사기관 지정 · 재지정

○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검사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 지정

< 지역별 전문검사기관 지정 현황 >

('15.6.30.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23	5	5	9	4

○ **(지정요건)** 전문검사기관 지정·재지정은 일정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을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 지정

○ **(변경지정)** 전문검사기관 변경지정은 검사범위, 설비의 교체·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신청 후 지정

< 전문검사기관 지정·재(변경)지정 처리절차 >

전문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 및 기술검토내역서 발급	⇒	전문검사기관 지정·재(변경)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	검사시설 확인신청 및 확인결과 통보
신청인 ⇄ 가스안전공사		신청인 ⇄ 시·도지사		신청인 ⇄ 가스안전공사

○ **(재지정)** 전문검사기관으로 재지정은 유효기간(3년) 만료 전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 재지정

□ 전문검사기관 지도 · 감독

○ 시·도지사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검사시설확인* 및 지도·감독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 검사시설확인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도지사 위탁을 받아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지정취소)** 전문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 전문검사기관이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 변경 2) 전문검사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 3) 검사부적정 등 전문검사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3. 가스사고 현황

□ 가스별 사고건수

○ 최근 5년간 가스사고 중 LPG 사고가 69%(434건)으로 대부분 차지

< 최근 5년간 가스별 사고건수 >

구분	합계(구성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626(100%)	134	126	125	121	120
LPG	434(69%)	92	95	85	86	76
도시가스	129(21%)	25	25	31	20	28
고압가스	63(10%)	17	6	9	15	16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원인별 가스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 및 제품노후**로 인한 사고는 22%(139건) 발생

< 최근 5년간 원인별 가스사고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구성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626(100%)	134	126	125	121	120
사용자취급부주의	205(33%)	44	38	41	41	41
공급자취급부주의	57(9%)	11	15	10	12	9
타공사*	19(3%)	5	3	3	2	6
시설미비	109(17%)	21	22	26	23	17
제품노후(불량)	30(5%)	7	2	3	4	14
기타***	119(19%)	26	28	30	18	17
고의사고	87(14%)	20	18	12	21	16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타공사 : 배설된 가스시설물이 굴착공사 등 타공사로 인하여 손상되는 사고

** 기타 : 고의사고, 단순누출, 과열화재, 자연재해 등

< LPG 용기 재검사 관련 언론보도 >

▶ **2012.9월 : "낡은 LPG통도 검사 않고 도색만. 시한 폭탄 나도는 셈"(한겨레신문)**

- ○ LPG통 검사 허술... 시민 안전 위협
- ○ 가짜 프로그램 짜고 치는 고스톱

▶ **2013.2월 : "26년 이상 용기 파기 않고 유통, 내압시험 미 실시"(SBS 8시뉴스)**

- ○ 전문검사기관이 폐기대상용기 파기하지 않고 유통
- ○ 용접부 가스누출에 의한 사고위험성 높음

▶ **2013.2월 : "9백만개의 시한 폭탄"(SBS 현장21)**

- ○ 인사동 화재사고시 LP가스폭발이 피해를 키웠다
- ○ KGS가 전문검사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했다

▶ **2013.10월 : "LPG용기 재검사 전반적 부실"(KBS 소비자리포트)**

- ○ 내압시험 생략, 시험성적서 위조 등
- ○ 신뢰성 없는 비수조식 내압시험기가 운영

▶ **2015.6월 : '가짜 검사' 시한폭탄 LPG 용기 전국 유통(TV 조선)**

- ○ 내압시험기 운영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검사결과를 조작
- ○ 업무시간이후 등 상주입회자 공백시 부실 재검사 실시
- ○ 입회자에 행정처분 권한 없으며 전문검사기관과 입회자 유착 의혹

파열된 LPG 용기

Ⅲ. 실태 및 문제점

1 형식적 관리감독이 부실검사기관 존속 보장

가. 부실검사에 대한 적발 · 처벌 미흡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이 형식적으로 운영**

○ 가스안전공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 확인**을 하고 있으나 검사 부적정 등 **적발 실적은 미흡**

- 가스안전공사 지도 · 확인에서 **5년간 부적합 사실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전문검사기관의 용기가 **검사부적정으로 가스 사고 유발**

※ 전문검사기관인 ㈜○○은 '14년 가스사고시 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 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1,68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최근 5년간 가스안전공사의 지도 ·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

○ 더욱이 가스안전공사가 지도 · 확인 등으로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조치 등 사후관리 부실

- 가스안전공사가 부적합 사항을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극히 일부(13%, 최근 5년간 5건)**에 불과

< 최근 5년간 전문검사기관 지도 · 확인 결과 >

연도	전문검사기관 수	지도 · 확인			행정처분 등 조치
		횟수	적합	부적합	
2010	22	22	20	2	0
2011	23	23	20	3	0
2012	23	35	8	15	3(사업정지 1, 개선권고2)
2013	23	41	12	11	1(개선권고)
2014	23	46	16	7	1(과태료)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특히,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결과 통지가 확인점검결과표를 송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시·도지사가 위반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

※ 가스안전공사 지도·확인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었으나, 행정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하면서는 적합으로 통보한 경우도 확인

- 가스안전공사가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관청에 처분을 요청했는데도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도 발견

‣ 가스안전공사는 '13.11월 특별단속 중 충전기한 표시오류가 적발된 ㈜○○에 대한 행정처분을 세종시에 요청하였으나, '15.7월 현재까지 조치가 없었고, 공사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부실검사가 적발되어도 부실검사를 거쳐 이미 **출고·유통된 용기에 대한 회수·재검사 등 조치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내압시험기 작동 불량, 충전기한 표시 오류** 등 부실검사는 적발용기뿐만 아니라 이미 출고·유통된 용기에 부실검사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적발된 전문검사기관 제재에 그치는 상황

※ 충전기한 표시오류로 '13년 3개 기관, '14년 4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나,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사업제한 등 행정처분만 하고 **충전기한이 잘못 표기되어 유통된 가스용기에 대한 회수 등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

- 더욱이, 재검사를 받고 출고된 가스용기는 **2~5년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게** 되므로 부실검사 가스용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상존

‣ **'14.5월** 청주시 도로에서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LP가스용기 폭발 사고 발생**

- 사고용기는 **용접불량** 등이 원인으로 폭발하였으나, **'13.11월 용기 재검사(○○석유(주))**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고,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 결과표에도 부적합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2014 가스사고연감, 가스안전공사)

‣ ○○석유(주)는 가스안전공사 지도·확인과정에서 **내압시험기 고장으로 '12년, '13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이나 기타 조치는 없었음

- ○○석유(주)는 **'14.5월 가스사고 이후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음

□ 검사기준을 위반한 부실검사에 대한 미온적 제재

○ 전문검사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제한이 가능

< 검사부적정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일부) >

위반행위	행정처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 제한 30일	사업정지 / 제한 60일	지정 취소	지정 취소
○ 검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 제한 20일	사업정지 / 제한 40일	사업정지 / 제한 80일	지정 취소
○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사업정지 / 제한 40일	사업정지 / 제한 80일	지정 취소	지정 취소

○ 내압시험설비 작동 불량, 검사기록 미유지 등 **검사기준 미준수는 사업정지·제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적발**되어도 **현장시정·개선요구가 대부분**

※ '13년 지도확인 결과, 내압시험기 작동 불량, 26년 경과 용기 두께측정 미실시, 검사기록(전산) 미유지 등 검사기준 미준수가 적발되었으나 사업정지·제한 등 행정처분은 없었고 개선권고 1건에 불과

○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행정처분이 제각각 운영**

사 유	적발유형	일자	전문검사기관	처분내용
‣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이수	지도확인	14. 5.19	㈜○○에너지	과태료 25만원
	지도확인	12. 9.18	㈜○○가스	처분없음
	지도확인	12. 9.20	○○가스산업	처분없음
‣ 폐기대상 용기 재검사	지도확인	12. 9.17	○○산업㈜	사업정지 60일
	단속	13.10.25	△△산업㈜	개선명령
	단속	13.11. 1	◇◇산업㈜	개선명령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사업제한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해도 통제수단 부재

- 일부 전문검사기관의 경우 검사부적정으로 사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사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

> ‣ ○○산업(주)의 경우 ’13.10. 충전기한 표시 오류로 행정처분(사업제한)을 받았으나, 사업제한 26일(’15.5.11~6.5) 동안 검사한 용기를 반출한 거래명세서가 확인되고, 전기사용량도 평소대비 약 59%(3,785kWh)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기간중에 검사업무한 의혹이 있음(’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 타법령 업무정지기간 중 검사업무 수행시 제재규정

>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행한 시험·검사기관은 **1차 위반만으로 지정취소**(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3호,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5)
>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검사기관은 **1차 위반만으로 지정취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8호,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8)

○ 일회적인 단속·적발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미흡**

- 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지도·확인 점검을 통해 **검사장비 작동 불량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다른 전문검사기관에서 유사사례 반복

< 전문검사기관 내압시험설비 작동불량 지적 실태 >

’12년 지적사항(23개 기관중 5개 기관)	’13년 지적사항(23개 기관중 4개 기관)
▸내압시험설비 고장으로 수리요함(○○산업) ▸내압시험기 패킹손상으로 고장(○○석유) ▸내압시험설비 압력계 부정확(○○산업) ▸내압시험 온도계 교정기한 경과(○○산업) ▸내압시험기 작동불량(○○산업)	▸내압시험설비 압력계 지시불량(○○에너지) ▸내압시험설비 고장으로 일정시간 압력 미유지(○○석유) ▸내압시험기 고장으로 측정 불가(○○산업) ▸내압시험설비 고장으로 일정시간 압력 미유지(○○주식회사)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나. 검사기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상주입회인이 퇴직자 취업 창구

<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검사기관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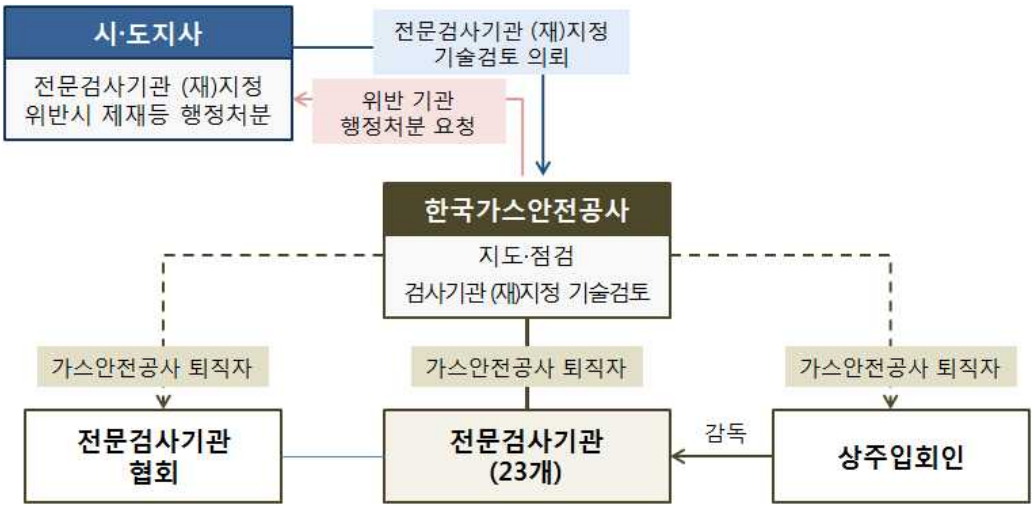

□ 전문검사기관 상주입회제도 부실검사 예방 효과 미흡

○ 가스안전공사는 전문검사기관 부실검사 감독을 위해 '13년 상주입회인을 도입하였으나 **감독 등 활동실적 관리가 전무한 실정**

- 가스안전공사는 **월 1회** 상주입회인이 **현장에 근무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다 '15.7월 입회일지를 마련하여 관리

※ 상주입회인은 '13.2월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전문검사기관에 1명씩 배치하여 관리하던 것을 '13.8월부터 공사 퇴직자 및 민간가스 전문가를 선발·운영

○ 전문검사기관마다 1인의 상주입회인이 근무하고 있으나, 상주입회인에 의해 **부실검사가 적발되거나 단속된 실적도 없는** 상황

- 상주입회인이 배치된 이후에도 전문검사기관들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충전기한 표시 오류, 파기대상 용기 충전 등 부실검사를 하다 외부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상주입회인 적발 실적은 전무

‣ 사업제한('15.5.11~6.5) 동안 검사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있는 ○○산업(주)에 상주입회하는 가스안전공사 출신 입회자는 전문검사기관의 부적정 검사를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검사기관의 입장을 옹호('15.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상주입회인이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

○ 23개 전문검사기관 상주입회인 중 민간전문가는 1인에 불과하고, **22개 기관**에는 **가스안전공사 퇴직자가 채용·근무**('15.8월 기준)

※ 상주입회인은 가스안전공사가 기간제 근로 형태로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13.8월~'15.7월)간 **상주입회인제도 운영에 8억398만원을 집행**

※ 전문검사기관 ㈜○○에너지 상주입회인 계약과정에 가스안전공사 퇴직자(본부장 출신)를 채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17개월간 계속해 오던 자리를 재계약하지 않고 공사 퇴직자를 채용한 후, 공사 퇴직자가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하자 이전 근무한 민간전문가를 다시 채용함. 이후, 공사 퇴직자가 상주입회인으로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자 민간전문가 대신 공사 퇴직자를 채용함('15.8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13.8월~'14.12월	'15.1월~3월	'15.4월~6월	'15.7월~
민간가스전문가 A	채용(17개월)	-	채용(3개월)	-
퇴직자 B (○○지역본부 본부장 출신)	-	채용(3개월)		채용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참 고 > 상주입회인에 대한 현장의견

‣ 상주입회인도 전문검사기관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와 식사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 더욱이 일부 전문검사기관에는 **가스안전공사 퇴직자가 부사장 등 간부로 재취업**하고 있어 부실검사 묵인 등 유착 우려

- 또한, 가스안전공사 퇴직자가 **전문검사기관 협회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가스안전공사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

‣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15.3월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출신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하고, 협회 실무를 맡는 사**무국장은 가스안전공사 2급 이하 퇴직자 중에서 신임 회장이 선임**하도록 결정('15.3월, 언론보도)

2 부실검사기관이 재지정에서 탈락하지 않은 구조

□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심사의 형식적 운영

○ 검사장비의 검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 미흡

- 검사단계 중 **내압시험**은 **가스용기 누출 및 이상팽창을 확인**하는 핵심적인 시험과정

※ 내압시험 방식은 수조식과 비수조식이 있는데, 비수조식이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검사가 간단

‣ **내압시험** : LPG 용기에 일정 압력을 가하였다가 제거하였을 때의 용기 복원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압력을 가한 후 누출 또는 이상팽창이 없고 영구증가율이 10% 이하인 경우 적합

∗ 영구증가율 = 압력을 제거 이후 이전 상태로 복원되었을 때 용기 부피/압력을 가하였을 때 증가한 용기 부피×100

‣ **내압시험 방식** : 수조식 / 비수조식

- 수조식 : LPG용기를 물탱크(수조)에 투입하여 내압시험하는 방식
- 비수조식 : LPG용기를 물탱크(수조)에 투입하지 않고 내압시험하는 방식

ΔV(내압시험 전증가량) = (A-B) - 〔(A-B) + VPβ〕

* A : 내압시험압력에서 압입수량, B : 내압시험압력에서 용기이외의 압입수량, V : 용기의 내용적, P : 내압시험에서 압력, β : 물 온도에 따른 압축계수

‣ LPG 내압시험기 현황

급 수 → 내.가압시험 → 배수 및 건조 → 컨트롤부

- 가스안전공사가 전문검사기관 재지정시 **비수조방식 내압시험 장비에 대해 검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정**하는 것으로 조사

※ 비수조식 방식으로 검사하는 ㈜○○가스의 경우 전증가량(ΔV)을 구하는 과정에서 B, V, P값을 측정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고정값(B=0, V=47, P=3.04)을 투입하여 결과값을 산출하고 있어 가스용기의 안전성 여부 확인 곤란

< 전문검사기관의 내압시험기 종류별 보유 현황 >

('15.6.30. 현재)

전문검사기관	수조식만 보유한 기관	수조식과 비수조식 동시 보유 기관	비수조식만 보유한 기관
총 23개	13개	10개	0개

○ **검사능력을 부풀려도 재지정검사 단계에서 검증없이 승인**

- 검사기관들이 전문검사기관 재지정을 위한 기술검토서에 **실제 검사능력 보다 많은 검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사례

- 가스안전공사는 재지정 여부 검토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검토를 승인

※ '15.1월 이후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4개 검사기관의 기술검토상의 내압시험설비의 검사능력과 '15.7월 공사 현장 점검시 실제 검사능력을 비교한 결과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53%까지 검사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

< 전문검사기관 재지정시 보고한 검사능력과 실제 검사능력 비교 >

전문검사기관명	재지정년월	기술검토서상 시간당 검사능력*	실 제 시간당 검사능력**	검사능력 감소비율
○○산업(주)	'15.1월	142개	67.5개	53%
㈜○○검사소	'15.3월	146개	86개	41%
△△산업(주)	'15.4월	135개	86개	37%
◇◇산업(주)	'15.3월	135개	88개	35%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기술검토서상 시간당 검사능력 : 전문검사기관 재지정시 제출한 기술검토서상 검사능력

** 실제 시간당 검사능력 : 한국가스안전공사 현장점검시 확인 된 실제 시간당 검사가능 수량

□ 부실검사로 계속 지적받아도 전문검사기관으로 재지정

○ 재지정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과 같은 자산, 인력, 검사장비 등 기준만 충족하면 재지정**되고 있어 탈락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

- '15년의 경우에도 23개 전문검사기관 중 19개 기관이 재지정되는 등 23개 전문검사기관 모두 탈락없이 재지정

<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현황 >

재지정 연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검사기관 수	23	2	0	1	1	0	19

○ 특히, **부실검사로 적발·처벌이 지속·반복되어도 대부분 지정취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실한 전문검사기관이 재지정 받는 구조

- 현재 규정은 전문검사기관이 **최근 1년간 동일한 사유로 검사기준을 3회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	행정처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 제한 30일	사업정지 / 제한 60일	지정 취소	지정 취소
○ 검사결과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 제한 20일	사업정지 / 제한 40일	사업정지 / 제한 80일	지정 취소

- 하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지도·감독이 연 1회 정도**만 실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검사기준 위반으로 지정취소될 가능성 희박

※ 전문검사기관인 ㈜○○에너지의 경우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매년 1건씩 행정처분('12.9월, '13.12월, '14.2월)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6월 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되어 검사업무를 수행

< 참고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불투명한 검사관리체계로 부실검사 확인 · 적발 곤란

가. 검사과정의 자의적 조작 가능으로 부실검사 만연

□ 검사절차를 생략해도 확인 곤란

○ 재검사 시 도장 등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공정만 거치고 내압검사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가나지 않는 공정은 생략**하는 사례

- 전문검사기관인 ○○산업을 방문하여 내압시험설비 오작동으로 다시 검사해야하는 용기 78개를 확인한 결과, ○○산업은 이틀 후 42개는 재검사 후 합격판정하여 유통하였으나 36개는 검사기록도 남기지 않고 유통('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검사소가 받는 검사비가 만원 정도인데 그 비용으로 밸브를 교체하고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배달까지 하는데 인력과 교체부품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내압검사까지 하면 수지가 맞지 않아 가장 중요한 내압검사를 생략한는다는 입장 ('13.2월, SBS 언론보도)

○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용기 검사시간이나 검사설비가 표기되지 않아** 해당 검사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곤란

- 검사시간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검사 간격, 작업시간 대비 처리 물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검사절차를 생략했는지 확인 곤란

- 또한, 용기가 어떤 검사설비에서 검사되었는지 표기·관리되지 않아 **해당 설비 고장, 검사능력상 문제**가 생겨도 조치가 어려운 상황

< 참고 > 검사시간 및 검사장비가 기록되는 검사성적서

검사시간이 기록된 검사성적서(A 검사기관)

내 압 시 험					누설 시험	종합 판정
전증가 (mL)	항구증가 (mL)	증가율 (%)	판정	시간		
70.2	5.4	7.7	O	083942	O	O
85.2	1.1	1.3	O	083942	O	O
75.2	3.7	4.9	O	084314	O	O
78.1	5	6.4	O	084314	O	O
85.4	5.4	6.3	O	084641	O	O

검사한 시간이 08시39분42초 기록되어 있음

검사장비가 기록된 검사성적서(B 검사기관)

내 압 시 험					도막	누출	종합판정	
장비번호	전증가 (mL)	영구증가 (mL)	증가율 (%)	판정			합격	불합격
D	65.6	1.2	1.8	O	O	O	O	
B	65.6	2.4	3.7	O	O	O	O	
D	68.3	1.0	1.5	O	O	O	O	
C	64.8	3.1	4.8	O	O	O	O	
D	59.6	1.6	2.7	O	O	O	O	

검사한 장비가 B, C, D로 기록되어 있음

□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 조작 가능

○ 가스용기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결과 값을 전문검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 안전에 취약

- 권익위가 검사 완료된 용기를 무작위 확인한 결과, **검사성적서와 검사용기 번호가 불일치**하는 등 검사성적서의 신뢰성이 취약

※ 권익위의 일회적인 실태점검에서도 허위작성, 조작 등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나, 가스안전공사 지도·확인이나 상주입회인 감사결과에서는 이러한 지적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

- 권익위와 가스안전공사가 전문검사기관인 ○○산업을 방문하여 내압시험 검사를 참관하는 과정에서 **용기 검사결과를 검사장비 오류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정황 목격('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권익위와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3개 전문검사기관을 방문하여 검사가 완료된 용기 20개를 무작위 선정하여 검사성적서의 용기번호와 대조해본 결과, **83%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산업과 △△산업은 20개 중 2개 일치, ○○에너지는 20개 중 6개 일치

○ 감독기관이 **검사성적서 작성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검사성적서를 수정·변경해도 확인 곤란

- 현장의견(○○산업 부사장) : 감독기관이 검사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전문검사기관이 최종적으로 검사결과를 수정·조작할 수 있음
- 검사설비업체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실적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검사소들의 요청에 따라 '가짜'로 검사 실적을 꾸며주는 프로그램도 공급해왔다"고 털어놓았다. ('12.9월, 한겨레)

□ 불투명한 검사절차를 악용한 불합격률 축소 요구

○ 재검사 신청시 검사신청서를 받고는 있으나, 신청용기를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용기총량만으로 검사신청서 작성·제출**

- 이로 인해 검사과정에서 **타 신청인의 용기와 섞임 현상**이 발생하고, 신청용기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절차도 없는 상황

< 검사용기 처리 실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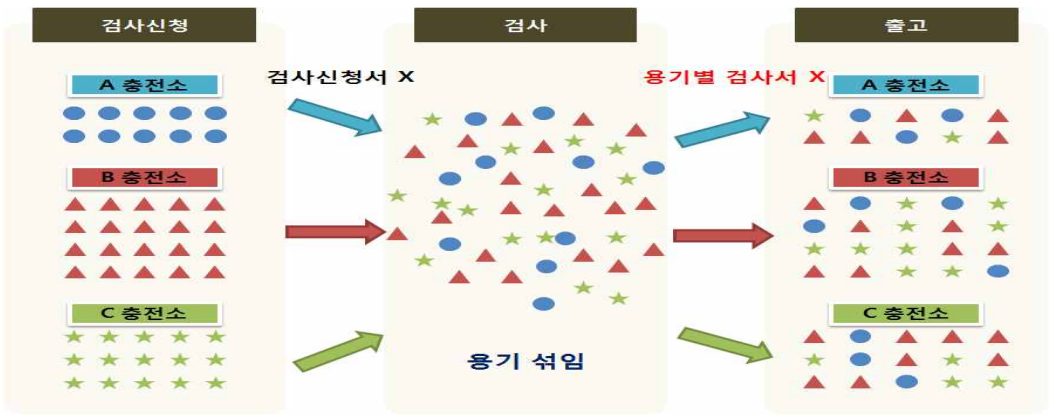

검사용기 **이력(용기별 신청서/검사서)이 관리되지 않고** 용기총량만 맞추어 검사.출고

○ 일부 신청인은 검사단계의 용기 섞임 현상을 악용하여 **낡은용기를 맡기고 신규용기를 요구**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파기하지 말 것을 요구**

< 참고 > 현장의견(○○산업 회장)

- 제대로 된 검사라면 의뢰한 물건을 검사하고 신청인에게 의뢰한 물건이 전달되어야 하나, 검사과정에 용기관리가 되지 않아 타 신청인의 용기와 섞임
- 불투명한 검사환경을 악용한 일부 충전소·판매소(신청인)는 검사의뢰한 검사물량 중 불량용기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파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검사의뢰시 낡은 용기를 맡기고 검사 후 신규 용기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

○ 특히 용기 **재검사가 전국의 전문검사기관간 경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검사기관은 **검사수수료를 지불하는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불합격률이 적게 나오도록 조정**하는 사례

※ 전문검사기관이 불합격 판정을 하여 용기를 파기할 경우 신청인은 소유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높은 기관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

- 검사소는 매해 합격불합격 비율이 담긴 검사실적을 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즉 엘피지 용기의 실제 검사 없이 3% 안팎의 불합격률은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12.9월, 한겨레)

나. 검사능력 유지 여부 확인 곤란

□ 검사장비 노후 · 결함으로 인한 부실검사 위험 상존

○ 검사장비 노후로 인한 부실검사 발생 소지

- 전문검사기관 내압시험설비(47기)의 **과반수 이상(57.4%, 27기)이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검사능력 저하 우려

※ 23개 전문검사기관에 설치된 47기 중 '05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27기(57.4%)이고, 90년대 설치된 것도 4기가 있는 상황

< 전문검사기관 내압시험설비 설치 현황 >

- 특히, 많은 전문검사기관이 현재의 검사장비로는 부피(무게)가 큰 50kg 용기를 원활하게 검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50kg 용기의 검사물량은 증가('05년 129,589개 → '14년 240,071개, 약 1.85배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 내압시험한 50kg LPG용기 변동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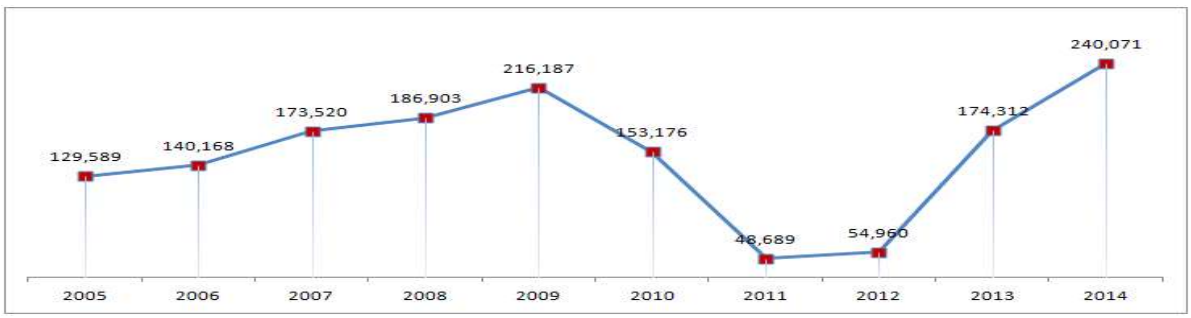

* '11년, '12년 검사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10년 5월 검사주기를 완화하였기 때문으로 '13년 이후 검사물량 다시 증가 추세

‣ ○○산업과 △△산업을 방문하여 내압시험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50Kg 용기는 가스용기와 검사장비의 부조화로 인한 검사시간지체, 검사결과값 오류발생, 검사직원의 장비운영 미숙 등 사례 발생('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장비 오작동**으로 인해 재검사가 필요한 용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추가검사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유통되는 사례

‣ ○○검사기관은 '15.7.6. 내압시험 중 검사장비 **오작동으로 인해 재검사가 필요한 용기가 78개 발생**하였으나, 이 중 42개 용기는 재검사를 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유통하였으나, **36개 용기는 검사결과 기록없이 유통**('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검사능력 유지여부 확인 곤란

○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결함장비가 발생**하면 이를 표시하고 서비스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은 마련

‣ 전문검사기관은 결함이 있는 장비에 대한 문서화된 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결함있는 장비는 격리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라벨링 또는 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검사기관은 이전 검사에서 이 장비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4-1-8조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9.6 결함장비)

○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등 **감독기관**이 검사장비 고장 등으로 **검사능력에 변동**이 있거나 **결함장비가 발생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실검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

- 특히 전문검사기관들이 내압검사 설비를 평균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대만 고장이 발생**해도 **검사능력이 50% 저하**되어 부실검사 우려가 높으나 감독기관은 이러한 사실 확인 곤란

※ 23개 전문검사기관에 총 47기 내압시험설비가 설치, 이 중 약 70%인 16개 기관이 내압시험설비 2기 보유(1기 보유 4개기관, 3기 보유 3개기관)

□ 검사능력 변경에 대한 관리 미흡

○ 전문검사기관은 설비능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 전문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에 관한 규정 >

-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의2)

○ 전문검사기관은 설비능력이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지정 신청을 하고, **설비능력 감소의 경우 변경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부실검사 우려

- 2015.7월 실태조사 결과, ㈜○○가스, ○○산업(주)의 경우 내압시험설비 보수 사유로, △△산업(주)의 경우 내압시험설비 교체 사유로 검사능력이 50% 감소하였으나 변경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 확인결과 2015.8.현재까지 내압시험설비 고장, 교체 등의 사유로 내압시험설비 능력이 감소하여도 변경지정 신청을 한 검사기관은 없으며 공사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지 않음

4 용기정보 인식 불가능 용기 유통

□ 주요정보 인식이 어려운 용기 유통으로 용기관리 곤란

○ 용기 제조일자, 용기번호 등의 정보는 재검사, 사고관리 등 용기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표시를 법률에 의무화

< LPG 용기 표시 의무화 규정 >

-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의2)
- (표시사항) 제조업자, 가스명칭, 용기번호, 내용적, 내압시험 압력 등(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관련 별표24)

○ 하지만 노후(훼손) 용기 증가로 용기번호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용기가 늘고 있어 **검사, 사고관리 등 용기관리 곤란**

※ LPG 유통용기의 45.4%인 659만개의 용기가 2년마다 용기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20년 이상된 용기('14.12월 기준, LPG용기 제조일자 기준)

< LPG 용기 표시 실태 >

표시가 선명한 용기	표시를 인식하기 어려운 용기

□ 용기정보 인식이 어려운 용기에 대한 검사기준 미비

○ 현행 제도는 용기에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자를 제재하고, 검사과정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용기**는 불합격 처리

< LPG 용기 표시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검사기준 >

-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관련 별표 13의 2 행정처분기준 제15호)
- 용기에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용기는 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31호 5.2.1.3.1. 외관검사)

○ 하지만, 표시는 되어 있으나 용기 노후(훼손) 등으로 **용기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검사기준 등 관련 규정이 불분명**

- 이로 인해 검사용기와 검사성적서가 불일치하는 용기가 유통되고, 부실검사를 적발해도 용기 추적관리가 어려워 용기관리에 한계

Ⅳ. 개선방안

1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 내실화

가. 부실검사 적발 및 공동대응 확대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강화**

○ (방식) 부실 점검, 유착 소지 예방을 위해 **지도·확인 등 방식 다양화**

- 현재의 가스안전공사 지사 중심의 점검체계를 **시·도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검사기관의 용기검사 실태 확인·공유

- **연고 등으로 인한 점검 실적 저조, 온정적 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지사간 교차 지도·확인 실시**

○ (주기) **정기 지도·감독을 확대하고 불시 점검도 다양화**하여 부실검사를 철저히 단속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을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 수시점검이나 집중 단속기관 운영 등 불시 점검 방식을 다양화

○ (대상) 정기 지도·감독과 별도로 **부실검사 위험이 높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불합격률이 평균 이하**인 검사기관, **검사가능용량 대비 과다 검사기관** 등에 수시 점검 실시

- 내압설비 등 검사설비 고장, 충전기한 허위 표기, 폐기 용기 검사 등 부실검사 위험이 높은 검사기관에 강화된 차등점검 실시

□ 부실검사 등 위반사항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정보 관리) 가스안전공사는 **전문검사기관별로 위반사항 등 점검 결과를 관리**, 취약요소를 분석하여 향후 지도·감독시 체계적 대응

※ 권익위가 가스안전공사에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적발·행정처분 등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출되는 자료마다 조치결과, 행정처분 통계가 상이하여 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제재의 적정성) 위반사항별로 제재기준이 현저히 다르지 않도록 가스안전공사는 **정기적(반기)으로 위반사항 조치결과 감독관청 보고**

- 산업부는 행정처분 기준 준수, 부실검사 재발방지 조치 등 제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처분관청, 가스안전공사에 보급(연1회이상)

※ 현재 상당수 가스안전공사 지사에서 행정관청에 점검결과 보고를 하면서 **위반사항 구분없이 단순히 점검결과표를 송부**하고 있어 시·도에서 위반사항 식별이 곤란한 측면이 존재('15.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보 공유) 가스안전공사 지사별로 일회적·단편적으로 관리되던 지도·감독 등 결과를 **처분관청, 가스안전공사(지사)간 상호 공유**

- 가스용기 검사가 전국 검사기관간 경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검사 등 위반실태 정보를 다른 시·도, 가스안전공사 지사간 공유**하여 부실검사 위험에 공동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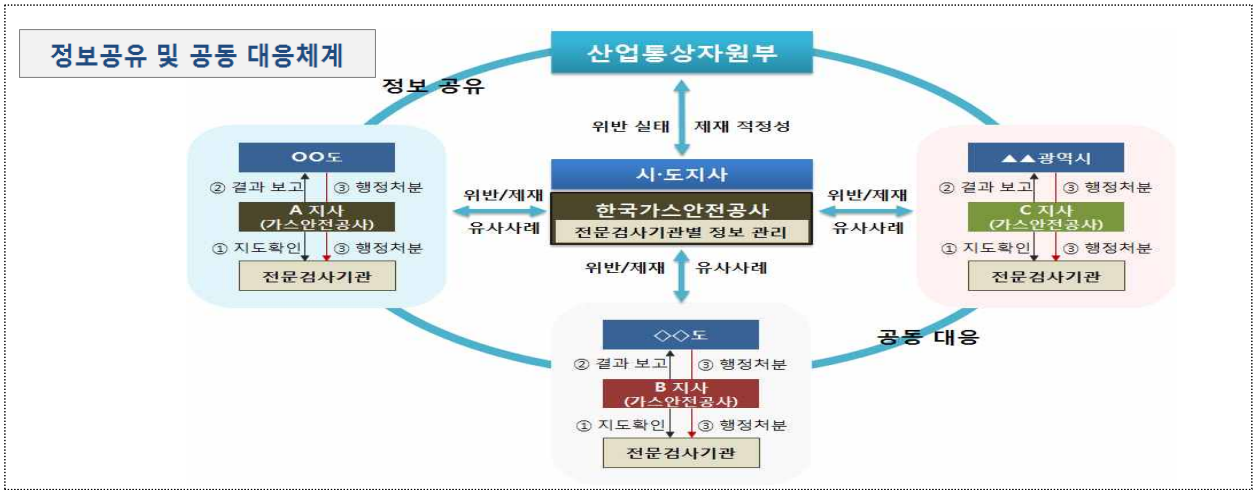

□ 행정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 수행기관 제재 신설

○ 현재 **사업제한(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해도 제재방법이 없던 것을 보완**하여 1차 위반으로도 강력하게 통제

※ (예시) 지정취소 사유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준 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포함하고, 행정처분 기준에도 반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행정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 수행시 제재방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2

현 행	개선안(예시)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5. (현행 3.~4.와 같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관련 법규	행 정 처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35조의2	지정 취소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통한 검사품질 강화

○ LPG 용기 이력관리제 도입

-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 또는 부실검사 용기 유통 등을 막기 위해 개별용기에 대해 추적 관리가 가능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LPG 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은 용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용기제작부터 검사, 파기까지 용기 유통의 전 단계를 정보화하는 사업임

○ **부실검사 용기에 대한 회수·재검사 조치 신설**

- 검사장비에 결함, 충전기한 허위 기재 등 **유사한 부실검사 위험**이 있는 경우 **동 기간 검사내역을 조사하여 재검사**하도록 근거 마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 참고 > 다른 법령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회수등 조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매년 전문검사기관에서 반복·유사 적발되는 사례는 집중 점검이나 단속 등을 통해 정비 조치

☞ 가스안전공사 지도·확인 등 점검계획에 반영

나. 유착관계 차단을 위한 부실검사 예방체계 구축

□ 상주입회인을 대체하는 부실검사 예방시스템 구축

○ 부실검사에 대한 통제실적은 저조한 반면 가스안전공사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주입회인제도를 대체**

- 종전과 같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하여 검사공정을 감시하거나, 내압시험 등 주요 검사공정에 CCTV 등을 설치 권장

< 참고 > 전문검사기관인 동일석유의 경우 검사장에 이미 CCTV를 설치하였고, ㈜한성은 CCTV 설치를 건의함

○ 장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공정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부실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해 **전문검사기관별로 부실검사 위험요소 선별, 진단, 상시모니터링 및 조치**체계 마련

-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장비 고장, 검사결과 조작 등 **부실검사 징후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가스안전공사(본사, 지사) 자동 통보**

- 가스안전공사는 위험요소별 대응체계에 따라 현지점검 등 조치를 하고, 유사사례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

※ (예시) 사업정지기간 중 검사장비 작동 → 가스안전공사 본사/지사 자동 통보 → 가스안전공사 현지 확인 → 위반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등 조치

< 부실검사 예방시스템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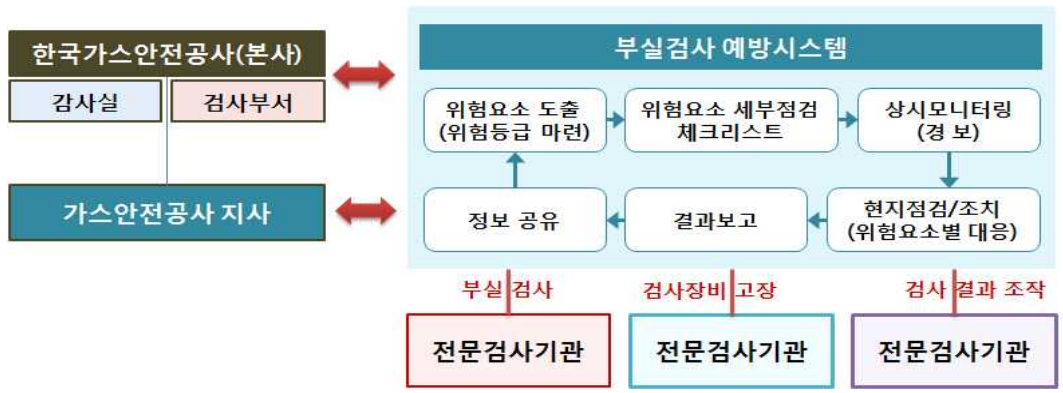

□ 유착관계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공사 퇴직자 관리 강화

○ 전문검사기관 등 가스안전공사 **피검사기관에 퇴직자 취업 제한**

-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의 피검사기관, 협력업체 재취업을 일정기한 제한

○ **퇴직예정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 부당한 업무처리 예방 등을 위해 **퇴직예정자의 직무 회피 부여**

- **재취업 예정업체와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퇴직심사 요건 및 절차 마련

○ 가스안전공사 **퇴직자 재취업 정보 관리**

※ 채용제한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퇴직임직원과 그들을 고용한 피검사기관, 협력회사는 당해 사실을 일정기간 내에 가스안전공사에 통보

☞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

□ 직무관련 퇴직자와 가스안전공사 검사감독관의 유착소지 차단

○ **사적 이해관계 사전 고지, 직무회피** 제도 마련

-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지도·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혈연·지연·학연 등에 대한 강화된 이해관계 관리 의무 부여**

○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유착 차단장치 강구**

-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와 **사적 접촉시 신고 의무 부여**

-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 관련 비밀 유출 금지**

☞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

2 부실검사기관 지정관리 강화

□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심사 내실화

○ 내압시험설비 표준모델 및 시험검증 기술개발

- 비수조식 내압시험장비가 재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조치

○ 전문검사기관 지정·재지정시 검사장비의 검사가능용량 명시

-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시 **검사기관지정신청서, 검사기관지정서에 검사장비의 검사가능용량을 명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참고>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자부고시)」 제4-1-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장비의 용량은 검사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만 규정

- 검사기관 지정·재지정시 검사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검증 강화

※ 신규지정 : 지정관청의 재검사기관 지정 후 검사시설 확인 시 검사능력 보유여부 확인하여 지정관청에 보고
재 지 정 : 재지정에 따른 검사시설 확인 시 검사능력 검증결과를 지정관청에 보고 후 재지정토록 하는 절차 마련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강화

○ 부실검사로 **적발·처벌이 반복되는 기관은 전문검사기관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 기준 보완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을 현행 최근 1년 기준에서 3년 기준으로 강화

< 개선방안 예시 > [별표 13의2]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현 행	개선안(예시)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투명한 검사관리시스템 구축

가. 검사공정의 투명성 제고

□ **검사공정 기록 · 관리 시스템 도입**

○ (기록 · 관리) 검사용기가 입고되어 출고될 때까지 **모든 공정이 기록 · 관리**될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절차를 생략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검사성적서에 용기검사 시간을 기록**

- 검사장비 고장 등으로 인한 부실검사시 용기의 회수 등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사성적서에 검사설비 입력**

○ (모니터링) 가스안전공사 등 감독기관이 부실검사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검사 공정 및 결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재장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공정을 기록 · 관리하지 않거나, 조작, 검사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장치 마련

○ (즉시 조치사항) 검사공정 기록 · 관리시스템 도입전까지는 현재 **검사 프로그램에 검사용기별 검사시간, 설비가 기록**되도록 변경

□ **검사프로그램 조작 방지장치 도입**

○ (조작 방지)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 · 변경할 수 없도록 검사장비 기준 보완 및 조작방지체계 구축

○ (위반 통보) **검사프로그램을 수정 · 변경**할 경우 **자동으로 가스안전공사 등 감독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검사결과 조작 원천 차단

○ (제재장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재장치 강화

○ (즉시 조치사항) 검사장비 보급업체를 통해 현재 보급된 검사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

□ 검사신청처 작성 및 검사성적서 발급 의무화

○ (검사 절차) 투명한 용기검사 및 관리를 위해 **검사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사 후 반드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도록 법령 등에 근거 마련

- 전문검사기관은 신청인이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거부하도록 의무 부여

< 참고 > 다른 법령 검사성적서 발급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험·검사의 절차 등)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행 점검) 검사신청서 및 검사성적서 발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 행정 처분하여 전문검사기관 이행실태 지속 점검

※ 현재 검사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마련되고 있고, 검사성적서는 검사기관이 제출하는 검사기관 운영규정(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8조)에 마련토록 되어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제재장치) 검사성적서 미발급,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전문검사기관 행정처분

< 참고 > 검사성적서 발급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이하 "시험·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별표 5] 시험・ 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9)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가 아닌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법 제10조 제1항제8호				
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험・검사업무정지 7일	시험・검사업무정지 15일	시험・검사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나)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해당 시험・검사업무정지 7일	해당 시험・검사업무정지 15일	해당 시험・검사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나.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유지 · 관리 강화

□ 검사 장비 및 실적에 대한 관리로 검사능력 유지여부 점검

○ **검사장비 고장**으로 검사능력 변동시 **보고 의무** 및 제재규정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장비가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계속 검사능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감독관청 및 가스안전공사에 보고

○ **검사실적 제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검사능력 유지 관리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실적 제출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

※ (현행) 검사기관의 검사실적 제출의무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해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반영

□ 검사능력이 감소한 경우에도 변경지정 신청대상 포함

○ 전문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로 설비능력이 증가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감소한 경우에도 하도록 구체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선안(예시) >

현행	개선안(예시)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u>이상의 변경</u> 4. (생략)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u>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u> 4. (현행과 같음)

□ 검사장비 성능검증제도 도입

○ 고장 등으로 검사장비를 **조립·수리한 경우에는 검사능력이 유지되는지 정밀도검사**를 받도록 근거규정 마련

< 참고 > 검사장비의 정확성 확보 관련 규정

> ‣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40조제1항)

○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장비로 LPG용기를 검사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 참고 >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규정

> ‣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한 경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 4호)

4 용기정보 인식 불능 용기에 대한 관리 강화

□ 노후·불량용기에 대한 검사기준 정비

○ 노후·불량용기 유통 차단을 위해 **용기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기준 정비

- 용기제조일, 용기제조사, 용기번호 등 불량 용기 회수·조사 등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인식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 처리 의무화

□ 용기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용기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신규용기) 용기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를 용기외면에 부착토록 하는 의무부과

○ (유통용기) 검사기간이 도래한 용기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일, 검사결과, 차기 검사날짜 등 추가정보를 입력토록 조치

Ⅴ. 조치사항

1. 권고 대상기관 : 산업통산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2. 조치기한 : 2016. 12월

※ 2017. 12월 (검사공정 상시 확인시스템 구축 및 근거 마련)

3.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소관 기관
1.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 내실화	**가. 부실검사 적발 및 공동대응 확대**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지도확인 방식 다양화 - 정기 지도·감독 확대 및 불시 점검 다양화 - 부실검사 위험기관에 상시 감사체계 구축	관련 내부지침	가스안전 공사
	○ 부실검사 등 위반사항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위반사항 등 점검결과 감독기관간 공유 - 위반사항 조치결과 감독관청 보고 등		
	○ 행정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 수행기관 제재 신설 - 사업제한(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 수행시 강력하게 제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통한 검사품질 강화 - LP용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소관 기관
	나. 유착관계 차단을 위한 부실검사 예방체계 구축		
	○ **상주입회인을 대체하는 부실검사 예방시스템 구축** - 검사공정 상시 확인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 - 상주입회인제도 폐지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산업통상 자원부
	○ **유착관계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공사 퇴직자 관리 강화** - 피검사기관에 퇴직자 취업 제한 - 퇴직예정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 가스안전공사 퇴직자 재취업 정보 관리	임직원 행동강령	가스안전 공사
	○ **직무관련 퇴직자와 가스안전공사 검사감독관의 유착소지 차단** - 사적 이해관계 사전 고지, 직무회피 제도 마련 -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유착 차단장치 강구		
2. 부실검사기관 지정관리 강화	○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심사 내실화** - 비수조식 내압시험장비가 재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조치	관련 내부지침	가스안전 공사
	○ **전문검사기관 지정·재지정시 검사장비의 검사가능용량 명시** - 지정·재지정 신청시 검사기관지정신청서, 검사기관지정서에 검사가능용량을 명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산업통상 자원부
	- 지정기관이 명시된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후 검사기관 지정	관련 내부지침	가스안전 공사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강화** - 최근 1년 기준에서 3년 기준으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소관 기관
3. 투명한 검사관리시스템 구축	**가. 검사공정의 투명성 제고**		
	○ 검사공정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 검사성적서에 용기검사를 한 시간과 설비가 입력되도록 프로그램 개선 - 검사결과는 공사 등 감독기관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산업통상 자원부
	- 검사공정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감시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장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검사프로그램 검사용기별 검사시간, 설비가 기록되도록 변경	-	가스안전 공사
	○ 검사프로그램 조작 방지장치 도입 -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검사장비 기준 보완 및 조작방지체계 구축	관련 내부지침	가스안전 공사
	-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검사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 행정처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
	○ 법령 등에 검사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 등 - 검사 후 반드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도록 법령 등에 근거 마련 - 검사신청서 미제출, 검사성적서 미발급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 검사성적서 미발급,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검사기관 행정처분	-	산업통상 자원부
	나.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유지.관리 강화		
	○ 검사 장비 및 실적에 대한 관리 - 검사장비 고장으로 검사능력 변동시 보고 의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소관 기관
	○ **검사능력이 감소한 경우에도 변경지정 신청** - 설비능력이 감소한 경우에도 변경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		
	○ **검사장비 성능검증제도 도입** - 정밀도 검사 근거규정 마련 및 위반시 제재기준		
4. 용기정보 인식 불능 용기 관리 강화	○ **LPG 용기 재검사기준 정비** - 용기정보 인식이 어려운 용기는 불합격 처리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가스안전 공사
	○ **LP용기 이력관리시스템 제도화** - 검사기간이 도래한 용기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일, 검사결과, 차기 검사날짜 등 체계적 관리	-	산업통상 자원부

참고 1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현황

권 역	전문검사기관	소재지	관할본부
경 기	광일산업(주)	경기 포천군 신북면	경기북부지사
	(주)시스텍안산검사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서부지사
	(주)시스텍덕평검사소	경기 이천시 마장면	경기동부지사
	경복산업(주)	경기 김포시 대곶면	경기중부지사
충 청	중원산업(주)	충북 충주시 금가면	충북지역본부
	대진산업	충북 청원군 강내면	
	동일석유(주)	대전시 중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한성	충남 연기군 서면	
	동신산업(주)	충남 논산군 연무읍	
강 원	대한산업(주)	강원 춘천시 신북읍	강원지역본부
경 북	대신산업(주)	경북 영천시 화산면	대구경북지역본부
	한성산업(주)	경북 경주시 용강동	경북동부지사
	(주)경북가스검사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경북북부지사
경 남	MS가스(주)	부산 사상구	부산지역본부
	BK에너지(주)	부산 사하구	
	(주)시스텍신포검사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지역본부
	경서에너지(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국가스산업㈜	경남 김해시 지내동	
	(주)성남	경남 사천시 사남면	경남서부지사
전 남	(주)나주가스	전남 나주시 문평면	광주전남지역본부
	(유)광전산업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신일에너지	전남 담양군 무정면	
제 주	㈜미래에너지	제주 제주시 한림읍	제주지역본부

참고 2 불량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1월)

제조단계

□ 신규 용기 제조기준 상향 조정

○ 국제기준에 준한 압력반복검사, 파열시험 항목 추가

○ 용기 외면 표식에 방수 코팅·자외선 차단 기능성페인트 사용 의무화

□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

○ 용기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3년 주기로 실시

○ 용기제조업체에 대한 상시점검 강화

충전·판매단계

□ 용기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 ICT기술활용 LP가스용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용기 유통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허가 취소 등 처벌근거 마련

○ 판매사업자와 충전사업자 간 용기 안전관리 업무위탁 활성화

□ 판매소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 판매소 간판 기준 마련 및 용기 판매·점검대장 작성 의무화

○ 운반차량 등록을 의무화하여 등록 차량만 용기 적재·운반 허용

□ 폐기대상 용기에 대한 관리프로세스 마련

○ 용기 폐기업무를 검사기관으로 일원화, 분기별 가스안전공사에 결과 통보

○ 폐기대상 용기 보관행위를 금지유형으로 규정, 위반시 처벌 근거 마련

사용중 용기 검사단계

□ 민간 전문검사기관 관리 철저

○ 내압시험 등 주요 검사공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사기관 고유번호 부여 후 용기 각인 추진

○ 검사기관 3년주기 정기검사제도 도입

○ 가스안전공사 상주 입회점검 강화 등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감독·단속 철저

□ 검사대상 용기기준 대폭 강화

○ 26년 경과 용기는 부식방지 도장, 용기두께 측정 의무화 등 강화된 검사기준 합격시 사용 허용, 수직도 검사 항목 신설

소비 · 사용 단계

□ 유통용기 일제점검 실시

○ 불량 유통용기 실태점검을 전면실시하여 적발된 불량용기 전량 회수·폐기

○ 용기 외부에 소비자 안전정보 부착

□ 국민적 감시체계 구축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LP가스 설치시 완성검사 의무화

○ 불량 LP가스용기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 안실련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민관 감시체계 구축

□ 사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

○ 충전 · 판매업자에 대한 원스트라크 아웃제 등 실효적 행정처분 강화

○ 사업정지 기간(10일→30일) 및 과징금(2천→4천만원) 상향 조정

○ 경찰,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공조 강화

참고 3 관련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①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7.12.2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9>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삭제 <2009.11.19>
마.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다. 제1호마목·바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③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④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전문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9.11.19]

제25조(업무의 위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11.19, 2010.11.10, 2013.3.23>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전문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9.11.19]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전문개정 2008.7.16]

[별표 22] <개정 2015.9.17.>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5년마다		2년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5. 검사장비의 규격·성능 표시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5.4.9.>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제목개정 2009.11.20.]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8.7.16.]

제58조의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전문개정 2015.4.9.]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별표 13의2] <개정 2015.4.9.>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고압가스의 제조·충전·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행정처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

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1회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46호가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라목에 따른 개선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관련 법규	행 정 처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4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4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4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3호				
가.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영 제 24조제2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나.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영 제24조제2항제1호 다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5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90일	지정 취소
다. 삭제 <2011.11.25>					
라.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영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다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마. 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을 임의	영 제24조제2	사업	사업	사업	지정

로 변경한 경우	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다목	정지 또는 제한 20일	정지 또는 제한 40일	정지 또는 제한 120일	취소
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바목 및 제2호 다목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20일	지정 취소
4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그 밖에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가.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나. 검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다.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4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80일	지정 취소	지정 취소